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병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874 발의연월일: 2022. 12. 12.

발 의 자: 안병길 · 구자근 · 권명호

김선교 · 김희곤 · 류성걸

박대수 · 백종헌 · 유의동

이종배 · 이종성 · 이주환

최춘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해양진흥공사(이하 "공사")는 선박,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, 자산 취득을 위해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및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·주식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.

공사는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인 국내외 항만 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연관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나, 현행법상 공사의 지원대상이 되는 해운항만업이 「해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과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원이 어려움.

이에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항만물류 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, 해운항만업의 대상에 선박연료공급

업 등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, 같은 조 제4호·제5호 및 제11조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"해운항만업"이란 다음 각목의 업을 말한다.
 - 가. 「해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
 - 나.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- 다. 「항만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「항만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(다른 법률에 따라 행해지는 「항만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「항만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하다)
- 4. "해외항만개발사업"이란 「항만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 사업에 준하여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정되는 시설의 신설, 개축, 보강, 유지, 보수, 운영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5. "해외항만물류사업"이란 대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

해운, 항만 및 연계 물류시설의 개발, 보강, 유지, 보수 및 운영을 말한다.

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0호(종전의 제9호) 중 "제8호"를 "제9호"로 한다.

5.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, 채무보증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행 개 정 안 혂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"해운항만업"이란 「해운 2. "해운항만업"이란 다음 각목 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 의 업을 말한다. 업 및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조 가. 「해운법」 제2조제1호 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을 에 따른 해운업 나.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 말한다. 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 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4 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 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 다. 「항만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「항만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 업(다른 법률에 따라 행해 지는 「항만법」 제2조제7 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「항만법」 제2조제12 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 발사업을 포함한다)

3. (현행과 같음)

3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호의 업무를 한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5. ~ 8. (생략)

9. 제1호,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

- 4. "해외항만개발사업"이란 「항만법」제2조제7호에 따 른 항만개발사업에 준하여 대한 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과 유사한 내용 으로 지정되는 시설의 신설, 개축, 보강, 유지, 보수, 운영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말 한다.
- 5. "해외항만물류사업"이란 대 한민국 외에서 관할국가의 법령 에 따라 해운, 항만 및 연계 물류시설의 개발, 보강, 유지, 보수 및 운영을 말한다.

제11조(업무) ① 공사는 다음 각 제11조(업무) ① ------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 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, 채무 보증
- 6. ~ 9. (현행 제5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)

<u>10</u> .	
	<u>제9호</u>

<u>10</u> . ~ <u>12</u> . (생 략)	<u>11</u> . ~ <u>13</u> . (현행 제10호부터
	제12호까지와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